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B12504-A-0801
건명	송파종합건설주식회사 소유물건(2025타경5117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최정진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42 (불당동724) C&J타워 8층

대표전화 : (041)557-0070 FAX : (041)557-0071

## ( 토 지 )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지 사 장	전 일 섭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삼억사천이백오십오만일천원정 (₩342,551,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법보좌관 최정진		감정평가목적	경매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송파종합건설주식회사 (2025타경51170)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5. 4.10.	2025. 4. 8. ~ 2025. 4.10.	2025. 4.11.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sup>2</sup> )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sup>2</sup> )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31,141	토지	31,141	-	342,551,000
			이하	여백		
						₩342,551,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인)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신두2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4월 10일입니다.

## 6. 실지조사 실시기간

실지조사는 2025년 4월 8일 ~ 2025년 4월 1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7.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으며, 지적경계 등은 목측에 의거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으니 정확한 본건의 위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 조치가 필요시 됩니다.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일부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는 임야의 특성상 육안으로는 분묘 소재의 확인이 곤란하여 분묘소재 여부는 불확실하나 별도 확인 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이해관계인은 분묘 소재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요합니다.
- 본건 토지 일련번호(1,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으나,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개별요인에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일련번호(1,2)는 관할 관청(태안군청 산림경영팀)에 유선상 문의 결과 2021년 10월경 별채허가를 득하여 별채 이후 자력조립한 토지로 조사되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대상물건 개요

### 1.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형 상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sup>2</sup> )
1	원북면 신두리	산263-73	12,496	농림지역 생산관리	조림 등	임야	부정형	5,220
2	원북면 신두리	산263-76	18,645	농림지역 생산관리	조림 등	임야	부정형	5,2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1. 거래사례

[토지단가: 십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지 목	거래일자	총거래금액(원)	토지단가 (원/㎡)
		건물면적(㎡)			사용승인일	토지거래가액(원) <sup>1)</sup>	
ㄱ	원북면	8,476	농림지역	임야	2022.12.22	100,000,000	11,790
	황촌리 ***	-			-	100,000,000	
ㄴ	원북면	11,504	농림지역	임야	2022.03.30	120,000,000	10,430
	황촌리 ***	-			-	120,000,000	
ㄷ	원북면	28,284	농림지역	임야	2021.06.30	449,000,000	15,870
	황촌리 ***	-			-	449,000,000	
ㄹ	원북면	3,733	농림지역	임야	2023.06.24	35,000,000	9,370
	장대리 ***	-			-	35,000,000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거래가액 = 총거래금액 - 건물추정가액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감정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지 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비고
a	원북면 신두리 ***	39,239	농림지역	임야	2022.04.14	경매	15,900	-
b	원북면 신두리 ***	10,083	농림지역	임야	2021.04.26	경매	15,000	-
c	원북면 신두리 ***	4,298	농림지역	임야	2024.05.08	공매	15,600	-
d	소원면 소근리 ***	53,593	농림지역 보전관리	임야	2023.12.26	경매	11,000	-
e	원북면 반계리 ***	9,553	농림지역	임야	2024.03.29	경매	8,200	-
f	원북면 동해리 ***	24,992	농림지역 생산관리	임야	2024.03.26	경매	16,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지역	이용상황	가격수준(원/㎡)	비 고
해안 야산지대	농림지역	자연림 등	9,000~11,000 내외	-

## 4. 경매통계

용도별	충남 태안군 2024년 04월 ~ 2025년 03월					
	낙찰가			낙찰건		
구분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가율(%)	총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임야	23,490,587,544	8,123,661,501	34.6	275	48	17.5

[출처:인포케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 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text{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 \times \text{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2025.01.01]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소재지	지 번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도로접면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m <sup>2</sup> )
1, 2	A	원북면 신두리	산287	9,818	농림지역	자연림	임야	맹지	부정형 완경사지	4,24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적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	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A	충청남도 태안군	농림지역	2025.01.01 ~ 2025.02.28 : 0.096 2025.02.01 ~ 2025.02.28 : 0.051

### ■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기간	계산식	시점수정치
1, 2	A	2025.01.01 ~ 2025.04.10	$(1 + 0.00096) \times (1 + 0.00051 \times 41/28)$	1.00171

##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합니다.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정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라.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합니다. 개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A	1.02	1.00	1.00	1.00	1.02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합니다.				
2	A	1.02	1.00	1.01	1.00	1.03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행정적조건(일부 생산관리지역)에서 우세합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감정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가액과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액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 유사토지 가격수준과 경매통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토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 비교사례 선정

비교사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다음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지 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평가 사례	a	원북면 신두리 ***	39,239	농림지역	임야	2022.04.14	경매	15,9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격차율 검토

[격차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구분	비교사례	비교사례 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비교표준지	표준지공시지가(원/㎡)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가액	a	15,900	1.02064	1.000	0.638	10,354	2.437
기준시점 비교표준지가액	A	4,240	1.00171	-	-	4,247	

산출내역	시점수정	태안군 농림지역 지가변동률 (2022.04.14 ~ 2025.04.10)				
	지역요인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0.75	0.85	1.00	1.00	0.638
표준지는 비교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합니다.						

##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결정 의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2	A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경매통계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2.4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 적용단가

[적용단가 :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적용단가 (원/㎡)
1	4,240	1.00171	1.000	1.020	2.43	11,000
2	4,240	1.00171	1.000	1.030	2.43	11,000

###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 번호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11,000	12,496	137,456,000
2	11,000	18,645	205,095,000
합계		31,141	342,55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text{비준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 가. 거래사례 선정

#### ■ 거래사례 선정 기준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 ②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 ③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 ④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 ⑤ 용도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거래 사례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지 목	거래일자	총거래금액(원)	토지단가 (원/㎡)
			건물면적(㎡)				사용승인일	토지거래가액(원)	
1, 2	ㄱ	원북면	8,476		농림지역	임야	2022.12.22	100,000,000	11,790
		황촌리 ***	-				-	100,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지가변동률

거래사례	지 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ㄱ	충청남도 태안군	농림지역	2022.12.01 ~ 2022.12.31 : 0.093
			2023.01.01 ~ 2023.12.31 : 0.196
			2024.01.01 ~ 2024.12.31 : 0.572
			2025.01.01 ~ 2025.02.28 : 0.096
			2025.02.01 ~ 2025.02.28 : 0.05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1, 2	ㄱ	2022.12.22 ~ 2025.04.10	$( 1 + 0.00093 \times 10/31 ) \times ( 1 + 0.00196 ) \times$ $( 1 + 0.00572 ) \times ( 1 + 0.00096 ) \times$ $( 1 + 0.00051 \times 41/28 )$	1.00971

##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견	지 역 요 인 비 교 치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정 등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거래 사례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ㄱ	0.94	0.90	1.00	1.00	0.846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합니다.				
2	ㄱ	0.94	0.90	1.01	1.00	0.854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자연조건(지세 등)에서 열세하고, 행정적조건(일부 생산관리지역)에서 우세합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 적용단가

[적용단가 :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원/㎡)
1	11,790	1.000	1.00971	1.000	0.846	10,000
2	11,790	1.000	1.00971	1.000	0.854	10,000

###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 번호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10,000	12,496	124,960,000
2	10,000	18,645	186,450,000
합계		31,141	311,410,000

## 3. 토지 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2	342,551,000	311,41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V. 감정평가액 결정

### 1.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 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 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토 지	342,551,000
합 계	342,551,000

### 2.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342,551,000
합 계	342,551,000

# 토 지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73	임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2,496	12,496	11,000	137,456,000	
2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76	임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8,645	18,645	11,000	205,095,000	
	합 계							₩342,551,000.-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신두2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 등으로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조림 등'의 상태임.

##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젓소/양/사슴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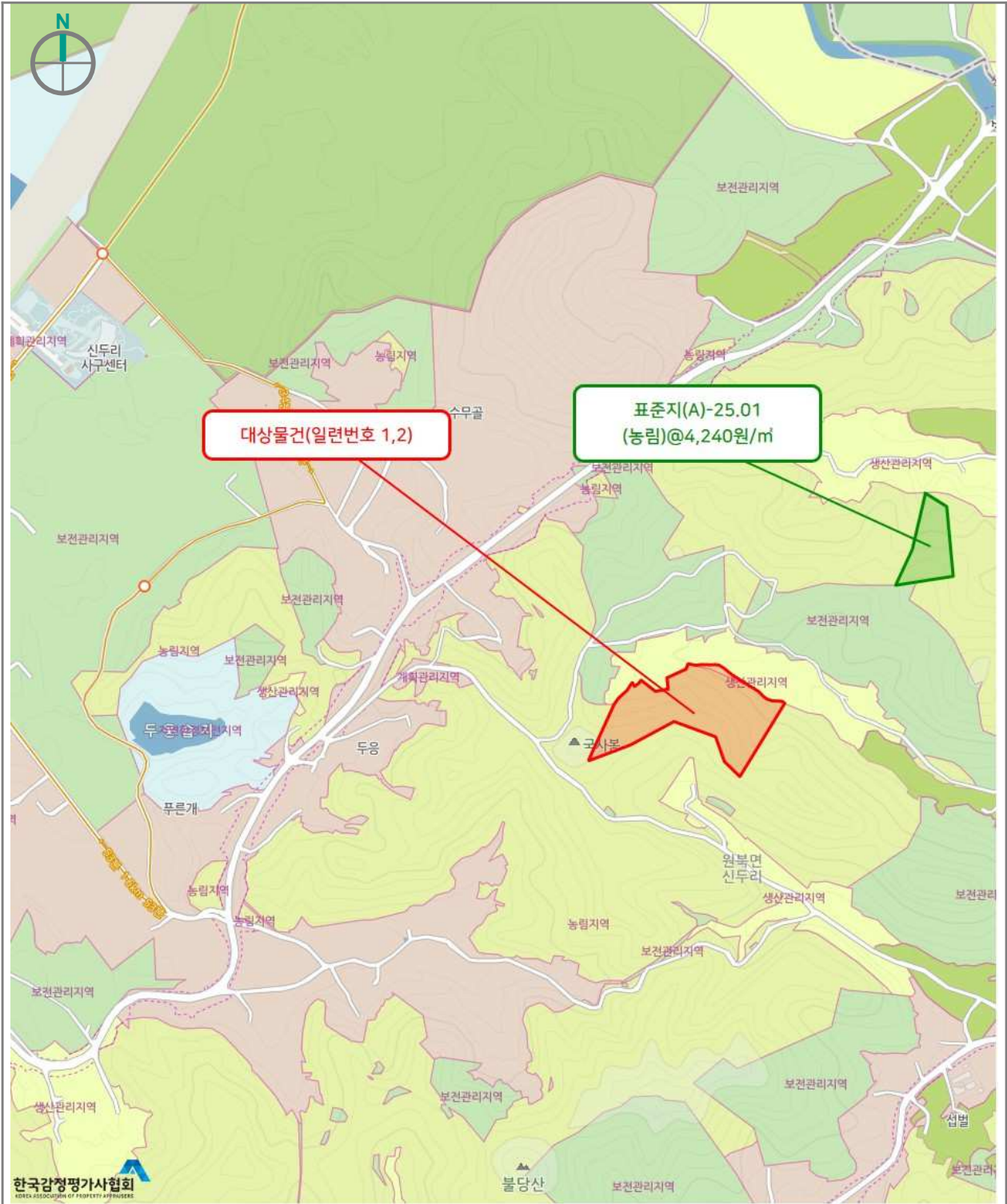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73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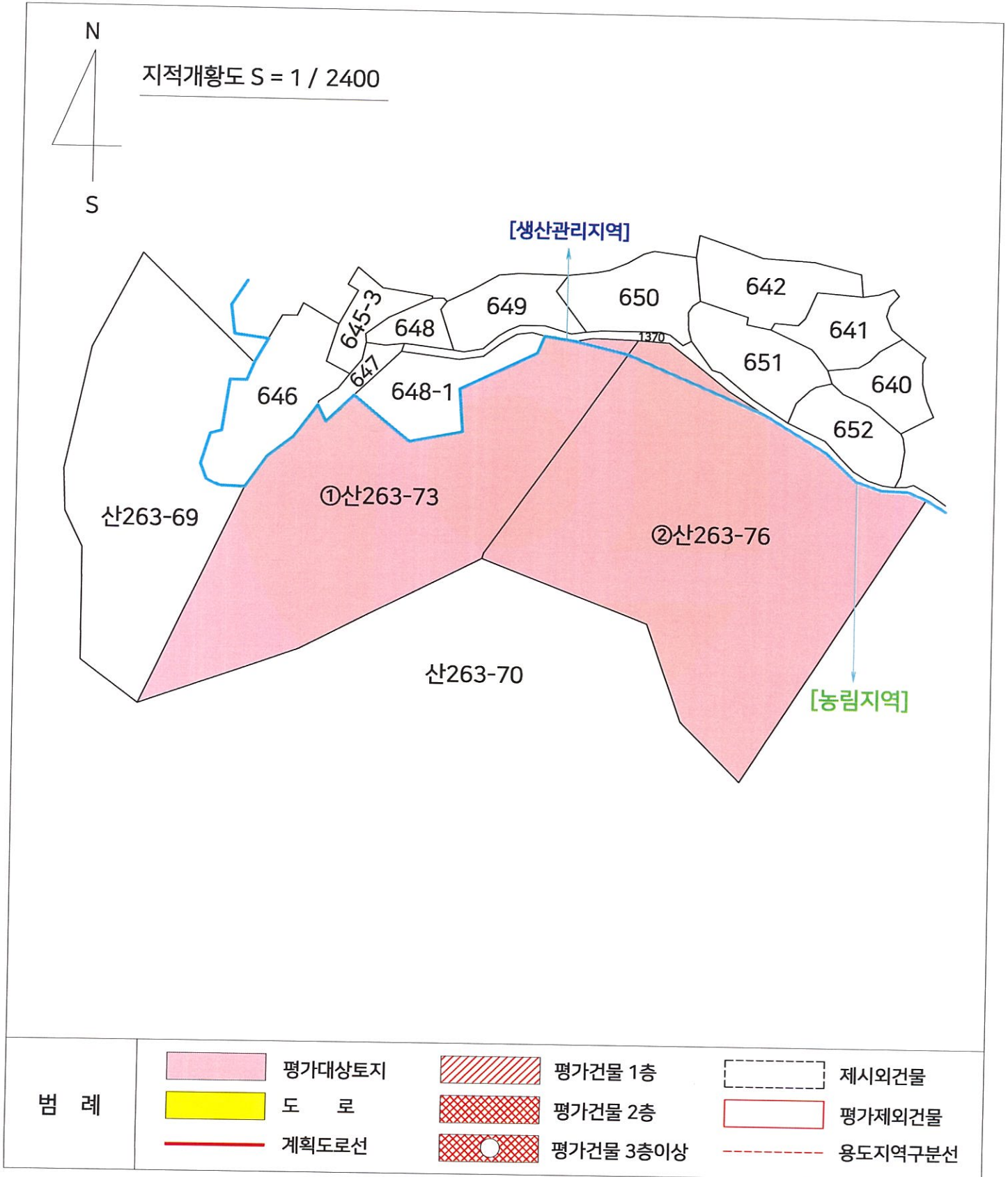


#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73 외
-----	----------------------------



# 지 적 및 건 물 개 황 도





【일련번호(1)】



【일련번호(1)】



【일련번호(2)】



【일련번호(2)】